

# 함양군 행복주택 관리·운영을 위한 함양군-한국토지주택공사 협약서

경상남도 함양군,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함양군 행복주택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각 기관이 상호 교류·협력하여 전문적인 관리 및 유지관리비 절감을 통해 함양군 공공시설주택의 입주민의 주거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원칙) 각 기관은 함양군 공공시설주택 관리·운영을 위한 협력을 수행함에 있어 각 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호혜적인 정신에 입각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상호 협력한다.

제3조(협력범위)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 역량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상호 적극 협력한다.

1.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함양군 내 공공임대주택의 공동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업자 공동선정 및 주택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.
2. 함양군은 공공임대주택 공동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.

제4조(해지 및 내용변경) 각 기관은 한 기관이 해지 및 내용변경의 의사 표시를 표명한 경우 상호 서면 합의를 거쳐 협약 해지 및 내용변경에 대하여 결정한다.

제5조(비밀준수) 각 기관은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상대방 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며, 상대방의 비밀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한다.

제6조(효력) 본 협약서는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협약종료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.

제7조(조정) 본 협약서의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.

경상남도 함양군,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성실한 협력체제 유지를 위해 본 협약서 2부를 작성·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0년 12 월 24일

 함양군

군수 서춘수  


 LH 한국토지주택공사

경남지역  
본부장 하승호  
